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 : (사)동방한학연구원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 (3년간)

※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